

보증금대상제품 1회용 컵 수집·운반 사업자 모집 공고(안)

「보증금대상제품 1회용 컵 수집·운반사업자」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.3.23

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

1. 공고개요

-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'22.6.10일 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도와 관련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반환받은 보증금대상 1회용 컵을 수집·운반하기 위한 사업자 모집

2. 신청대상

- (신청대상) 수집·운반 사업자

신청자격	주요업무	지원내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1호 및 제5항제5호, 제6호, 제7호 및 제46조- 폐기물수집·운반업- 폐기물중간재활용업- 폐기물최종재활용업- 폐기물종합재활용업- 폐기물처리신고 (※덧붙임1 참조)- 상기 인허가 사항 이외 해당 법률상 자격이 있는 경우 가능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준수사항(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[별표 5] 참조)- 회수한 1회용 컵을 구분하여 법령상 자격을 갖춘 재활용사업자에게 인계하고, 이와 관련된 정보를 센터에 제공- 보증금대상사업자와 회수 주기 및 방법 등에 대한 위·수탁계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처리지원금(법 제15조의 2제4항제2호)* 제도시행 이후 관련법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'처리지원금' 지급

3. 운영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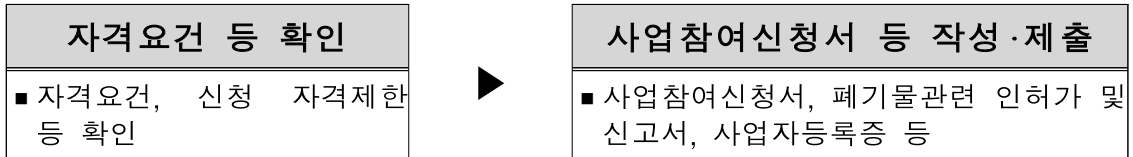
공고 및 접수	신청서 검토	안내	계약	처리지원금 지급 ('22.6.10일 이후)
신청서 제출	신청서 검토	적정 수집·운반 사업자 안내(센터 홈페이지 등)	보증금대상사업자와 수집·운반사업자 상호 계약	22.6.10일 이후부터 법 제15조의2제4항제2호에 따라 수집·운반한 1회용 컵에 대한 처리지원금 지급
신청기업	센터 (적정유무 검토)	센터↔보증금대상사업자	보증금대상사업자 ↔수집운반사업자	센터↔수집운반사업자

4. 수집·운반대상

- 전국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(약 38천개) [덧붙임 2참조]
 (※ 단, 관련법 등에 따라 영업대상 지역에 한하여 수집·운반 가능)

5. 신청방법

- 사업안내서 및 사업참여신청서 작성·제출



6. 공고 및 접수

- 공고기간: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
- 접수방법: 등기우편 접수
 ※ (접수처) 서울 종로구 인사동7길 12 백상빌딩 10층,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컵보증금 운영팀

7. 제출서류 등

- 1회용 컵 수집·운반사업 참여 신청서 1부.
- 사업자등록증 1부.
- 폐기물관련업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1부. (2.신청대상 참고)
 ※ 허가 또는 신고사항에 대한 변경내역을 반드시 포함

[붙임]

1회용 컵 수집·운반사업 참여 신청서

□ 일반현황

업체명			대표자	
주 소				
연락처	전 화		FAX	
	휴대폰		E-mail	
허가·신고 사항			사업자 등록번호	

□ 설비현황

운반차량	_____대	차량번호	
선별시설		압축시설	
계량시설		보관시설	

□ 수거신청지역(추가 가능)

구분		보증금대상사업자수	운반차량(번호)
광역지자체	기초지자체		
예) 서울시	전역		
예) 서울시	종로구		

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<첨부서류>

1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
2. 폐기물관련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* 1부.
* 폐기물수집운반업, 폐기물처리신고, 폐기물 중간·최종·종합재활용업

20 년 월 일

업 체 명 :

주 소 :

대 표 자 :

(인)

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 귀하